

제9장
자연인의 일시 이동

제9.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가. 출입국 절차란 일시 입국을 허용하는 사증, 허가, 승인 또는 그 밖의 문서 또는 전자적 허가를 말한다.

나. 당사자의 자연인이란 제8.1조(정의)자호에 정의된 당사자의 자연인을 말한다.
그리고

다. 일시 입국이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자연인이 영구적 거주의 의도 없이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제9.2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각 당사자의 양허표에 규정된 대로,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의 그 당사자 영역으로의 일시 입국에 영향을 미치는 그 당사자의 조치에 적용되며, 그러한 자연인은 상품 무역, 서비스 공급 또는 투자의 수행에 종사한다. 그러한 자연인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가. 상용 방문자

나. 기업 내 전근자, 또는

다.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각 당사

자의 양허표에 명시될 수 있는 그 밖의 범주

2. 이 장은 당사자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않으며,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국적, 시민권, 거주 또는 고용에 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자신의 국경의 일체성을 보전하고 자신의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이 자신의 영역으로 입국하거나 자신의 영역에서 일시 체류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 장에 따라 어떠한 당사자에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4.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에게 출입국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장에 따라 어떠한 당사자에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9.3조

배우자 및 부양가족

각 당사자는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자신의 양허표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약속을 할 수 있다.

제9.4조

일시 입국의 허용

1. 각 당사자는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자신의 양허표에 따라,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이 다음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시 입국 또는 일시 체류의 연장을 이 장에 따라 허용한다.

가. 규정된 출입국 절차를 위한 소정의 신청 절차를 따를 것, 그리고

나. 혀용 당사자로의 일시 입국 또는 일시 체류 연장을 위한 모든 관련 자격 요건
을 충족할 것

2.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출입국 절차의 처리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부과
되는 모든 수수료는 그 자체로 이 장에 따른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의 이동에 부당한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3. 당사자는 제1항가호 또는 나호를 준수하지 않는 다른 당사자의 모든 자연인의 일시
입국이나 일시 체류의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이 장에 따라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에게 일시 입국을 혀용한다는 사실만
으로, 그 자연인이 전문직을 수행하거나 달리 사업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어
떠한 면허 또는 의무적 행동 규범을 포함한 그 밖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부터 면제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제9.5조

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각 당사자는 제9.2조(적용범위)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이 자신의 영역으
로 일시 입국하고 자신의 영역에서 일시 체류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부속서 IV(자연
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자신의 양허표에 규정한다. 이러한 양
허표는 그 안에 포함된 자연인의 각 범주에 대하여 체류 기간을 포함하여 그러한 약속을 규
율하는 조건 및 제한을 명시한다.¹

제9.6조

신청의 처리

¹ 이 조의 목적상, 조건 및 제한은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자신의
양허표에 명시되지 않는 한 어떠한 당사자도 부과할 수 없는 모든 경제적 수요 심사 요건을 포함한다.

1. 당사자가 출입국 절차를 위한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제9.2조(적용범위)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으로부터 접수한 출입국 절차 또는 그 연장을 위한 완전한 신청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한다.

2. 각 당사자는 제9.2조(적용범위)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출입국 절차를 위한 완전한 신청을 접수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다음을 통보한다.

가. 신청의 접수, 그리고

나. 승인되었을 경우, 체류 기간 및 그 밖의 조건을 포함하여 신청과 관련된 결정

3. 각 당사자는 제9.2조(적용범위)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출입국 절차를 위한 완전한 신청을 접수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신청의 상태를 통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허용 가능한 한도에서, 서면 제출과 진정성이 동등한 조건하에서 전자적 형식의 출입국 절차를 위한 신청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적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원본 문서를 대신하여 그 법과 규정에 따라 증명된 문서의 사본을 수용한다.

제9.7조

투명성

1. 각 당사자는,

가. 이 장의 운영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출입국 절차에 대한 설명 자료를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한다.

- 나.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에 대한 요건을 그 밖의 당사자들의 자연인이 그러한 요건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설명자료, 관련 양식 및 문서를 포함하여, 자신의 영역에서 그리고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한다.
 - 다.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의 일시 입국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출입국 조치의 수 정 또는 개정이 있는 경우, 나호에 따라 공표되거나 달리 공개된 그 정보가 가능한 한 조속히 갱신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 라. 자연인의 일시 입국 및 일시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유지한다.
2. 각 당사자는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제1항에 언급된 정보를 영어로 공표하도록 노력 한다.

제9.8조

협력

당사자들은 그 밖의 당사자들의 자연인의 일시 입국 및 일시 체류를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협력 분야를 논의할 수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 당사자들에 의하여 제안된 분야나 당사자들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그 밖의 분야를 고려한다.

제9.9조

분쟁해결

1. 당사자들은 이 장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견에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어떠한 당사자도 일시 입국 허용의 거부에 대하여 제19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가.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되는 경우, 그리고

나. 영향을 받은 자연인이 그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행정 구제 절차를 완료했을 경우

3. 제2항나호의 목적상, 다른 쪽 당사자가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 절차를 포함한 구제 절차가 개시된 날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안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않았고, 그러한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관련된 자연인이 야기한 자체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 행정 구제 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